



(19) 대한민국특허청(KR)
(12) 공개특허공보(A)

(11) 공개번호 10-2011-0040412
(43) 공개일자 2011년04월20일

(51) Int. Cl.

G09F 15/00 (2006.01) G09F 7/00 (2006.01)

(21) 출원번호 10-2009-0097666

(22) 출원일자 2009년10월14일

심사청구일자 2009년10월14일

(71) 출원인

박승구

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73 (1/4) 샘터마을 104-804

(72) 발명자

박승구

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73 (1/4) 샘터마을 104-804

(74) 대리인

특허법인 아주양현

전체 청구항 수 : 총 9 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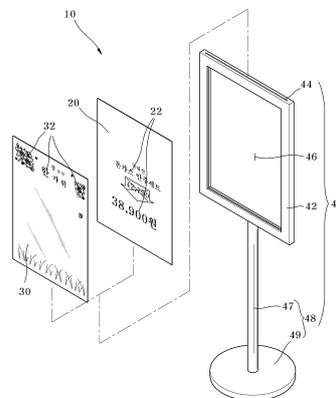
(54)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 및 그의 방법

(57) 요약

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를 개시한다. 개시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는,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 표시장치에 있어서, 상기 광고 표시장치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내용이 인쇄되는 제1인쇄부를 형성하는 메인광고부재; 및 상기 메인광고부재의 전면에 접한 상태로 배치되고,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광고내용이 인쇄되는 제2인쇄부를 형성하는 투명체인 보조광고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.

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는, 인쇄부를 갖는 메인광고부재의 전면에 제2인쇄부를 갖는 보조인쇄부를 서로 겹쳐 소비자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므로 잉크의 사용량을 줄여 인쇄 비용 및 광고비용을 절감하고, 친환경을 도모할 수 있다.

대표도 - 도3



특허청구의 범위

청구항 1

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 표시장치에 있어서,

상기 광고 표시장치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내용이 인쇄되는 제1인쇄부를 형성하는 메인광고부재; 및

상기 메인광고부재의 전면에 접한 상태로 배치되고,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광고내용이 인쇄되는 제2인쇄부를 형성하는 투명체인 보조광고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.

청구항 2

제 1 항에 있어서,

상기 메인광고부재의 제1인쇄부와 상기 보조광고부재의 제2인쇄부에 인쇄되는 광고 내용이 서로 다른 영역에 배치되거나 겹침을 최소화하여 합체로 인해 완성된 광고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.

청구항 3

제 1 항에 있어서,

상기 메인광고부재는 종이류이고, 상기 보조광고부재는 합성수지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.

청구항 4

제 1 항에 있어서,

상기 메인광고부재와 상기 보조광고부재가 서로 합체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홀더부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.

청구항 5

제 4 항에 있어서, 상기 홀더부재는

합체된 상기 메인광고부재와 상기 보조광고부재가 가이드홈으로 삽입되고, 전시공간으로 제1, 제2인쇄부의 광고 내용을 표시하는 프레임; 및

상기 프레임의 저면에 연결되어 바닥에 지지하는 받침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.

청구항 6

제 5 항에 있어서, 상기 받침부재는

상기 프레임의 저면에 결합되고, 하측으로 연장되는 지지봉; 및

상기 지지봉에 결합되어 바닥에 접하여 지지하는 바닥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.

청구항 7

제 4 항에 있어서,

상기 홀더부재는 합체된 상기 메인광고부재와 상기 보조광고부재를 고정면체에 부착하는 접촉테이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.

청구항 8

제 4 항에 있어서,

상기 홀더부재는 합체된 상기 메인광고부재와 상기 보조광고부재를 수납공간부에 수납하는 투명보관체; 및 상기 투명보관체를 부착하는 접촉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.

청구항 9

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내용인 제1인쇄부를 설정하는 단계;

상기 제1인쇄부를 갖도록 메인광고부재를 인쇄하는 단계;

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내용인 제2인쇄부를 상기 제1인쇄부와 서로 겹치지 않거나 겹침을 최소화하도록 설정하는 단계;

상기 제2인쇄부를 갖도록 투명재질의 보조광고부재를 인쇄하는 단계;

상기 메인광고부재의 전면에 상기 보조광고부재를 합체하여 완성된 광고 내용을 표현하는 단계; 및

합체된 상기 메인광고부재와 상기 보조광고부재를 고정하여 광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.

명세서

발명의 상세한 설명

기술분야

[0001] 본 발명은 광고 표시장치 및 그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, 더욱 상세하게는, 제1인쇄부를 갖는 메인광고부재의 전면에 제2인쇄부를 갖는 보조광고부재를 서로 겹쳐 소비자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므로 잉크의 사용량을 줄여 인쇄비용 및 광고비용을 절감하고, 친환경을 도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 및 그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.

배경기술

[0002] 일반적으로, 현대의 도심에는 건물들의 내부 또는 외부에 사용자의 안내, 홍보, 계도,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각종 광고표지판, 안내표지판, 교통표지판 등의 광고장치들이 건물 내,외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.

[0003] 광고장치는 일정한 형상을 갖는 고정체에 문자, 디자인 및 도형 등을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된다.

[0004] 백화점이나, 마트, 슈퍼마켓 등의 유통업체에서는 소비자가 판매되는 여러가지 물품의 가격정보, 물품을 나타내는 도형 및 회사 로고 등을 표시한 광고지를 홀더부재에 삽입 고정된 상태에서 받침대로 지지하거나 벽면 등에 테이프로 부착하여 소비자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전시하는 광고지를 광고장치로 사용한다.

[0005] 전술한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배경기술을 의미하며, 종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

발명의 내용

해결 하고자하는 과제

- [0006] 그런데, 종래의 유통업체에서 사용하는 광고지는 판매되는 물품 또는 가격정보 등이 바뀌는 경우, 기존의 광고지를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내용이 표기되는 광고지를 인쇄하여 사용하므로 사용되는 잉크량이 많아져서 인쇄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을 지닌다.
- [0007] 또한, 폐기 처분된 광고지와 광고지에 사용되는 잉크로 인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, 자연에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므로 친환경적이지 못한 문제점을 지닌다.
- [0008] 따라서,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.
- [0009]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서, 제1인쇄부를 갖는 메인광고부재의 전면에 제2인쇄부를 갖는 보조광고부재를 서로 겹쳐 소비자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므로 잉크의 사용량을 줄여 인쇄비용 및 광고비용을 절감하고, 친환경을 도모하는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 및 그의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과제 해결수단

- [0010]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는,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 표시장치에 있어서, 상기 광고 표시장치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내용이 인쇄되는 제1인쇄부를 형성하는 메인광고부재; 및 상기 메인광고부재의 전면에 접한 상태로 배치되고,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광고내용이 인쇄되는 제2인쇄부를 형성하는 투명체인 보조광고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.
- [0011] 또한, 상기 메인광고부재의 제1인쇄부와 상기 보조광고부재의 제2인쇄부에 인쇄되는 광고 내용이 서로 다른 영역에 배치되거나 겹침을 최소화하여 합체로 인해 완성된 광고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.
- [0012] 또한, 상기 메인광고부재는 종이류이고, 상기 보조광고부재는 합성수지재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.
- [0013] 또한, 상기 메인광고부재와 상기 보조광고부재가 서로 합체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홀더부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.
- [0014] 또한, 상기 홀더부재는 합체된 상기 메인광고부재와 상기 보조광고부재가 가이드홈으로 삽입되고, 전시공간으로 제1, 제2인쇄부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프레임; 및 상기 프레임의 저면에 연결되어 바닥에 지지하는 받침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.
- [0015] 또한, 상기 받침부재는 상기 프레임의 저면에 결합되고, 하측으로 연장되는 지지봉; 및 상기 지지봉에 결합되어 바닥에 접하여 지지하는 바닥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.
- [0016] 또한, 상기 홀더부재는 합체된 상기 메인광고부재와 상기 보조광고부재를 고정면체에 부착하는 접촉테이프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.
- [0017] 또한, 상기 홀더부재는 합체된 상기 메인광고부재와 상기 보조광고부재를 수납공간부에 수납하는 투명보관체; 및 상기 투명보관체를 부착하는 접촉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.
- [0018]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방법은,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내용인 제1인쇄부를 설정하는 단계; 상기 제1인쇄부를 갖도록 메인광고부재를 인쇄하는 단계;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내용인 제2인쇄부를 상기 제1인쇄부와 서로 겹치지 않거나 겹침을 최소화하도록 설정하는 단계; 상기 제2인쇄부를 갖도록 투명재질의 보조광고부재를 인쇄하는 단계; 상기 메인광고부재의 전면에 상기 보조광고부재를 합체하여 완성된 광고 내용을 표현하는 단계; 및 합체된 상기 메인광고부재와 상기 보조광고부재를 고정하여 광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.

효과

- [0019]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, 본 발명에 따른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 및 그의 방법은, 제1인쇄부를 갖는 메인광고부재의 전면에 제2인쇄부를 갖는 보조광고부재를 서로 겹쳐 소비자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므로 잉크의 사용량을 줄여 인쇄비용 및 광고비용을 절감하고, 친환경을 도모할 수 있다.

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

- [0020] 이하,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를 설명하도록 한다. 이 과정에서 도면에 도시된 선들의 두께나 구성요소의 크기 등은 설명의 명료성과 편의상 과장되게 도시되어 있을 수 있다. 또한,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,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그러므로,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.
- [0021]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의 분리 사시도이고,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의 사용 상태 사시도이며, 도 3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를 제1실시예의 홀더부재에 설치 전 분리 사시도이고, 도 4는 도 3에 도시된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의 사용 상태 사시도이며,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를 제2실시예의 홀더부재로 사용하는 상태도이고,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를 제3실시예의 홀더부재로 사용하는 상태도이다.
- [0022] 도 1 내지 6을 참조하면,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 표시장치(10)에 있어서,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광고 표시장치(10)는,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내용이 인쇄되는 제1인쇄부(22)를 형성하는 메인광고부재(20) 및 메인광고부재(20)의 전면에 접한 상태로 배치되고,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광고내용이 인쇄되는 제2인쇄부(32)를 형성하는 투명체인 보조광고부재(30)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.
- [0023] 메인광고부재(20)의 제1인쇄부(22)와 보조광고부재(30)의 제2인쇄부(32)에 인쇄되는 광고 내용이 서로 다른 영역에 배치되거나 겹침을 최소화하여 합체로 인해 완성된 광고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[0024] 메인광고부재(20)는 종이류이고, 보조광고부재(30)는 합성수지재인 것이 바람직하다.
- [0025] 메인광고부재(20)는 종이류 중에서도 일반적인 복사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[0026] 메인광고부재(20)의 제1인쇄부(22)는 광고 내용 중에서 마트, 슈퍼마켓, 백화점 등에서 시간 또는 일별로 변경되는 내용을 인쇄되는 것을 지칭한다.
- [0027] 예를 들어서, 메인광고부재(20)의 제1인쇄부(22)는 도 1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, 상품에 대한 가격 및 제품설명 및 제품 내용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인쇄되는 영역을 말한다.
- [0028] 보조광고부재(30)의 제2인쇄부(32)는 도 1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, 광고 내용 중에서 마트, 슈퍼마켓, 백화점 등의 유통업체의 명칭 및 그 명칭에 수반되는 도안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내용을 지칭한다.
- [0029] 보조광고부재(30)의 제2인쇄부(32)는 통상적으로 광고 내용 중에서 상단, 하단, 측단 모서리 부분에 인쇄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.
- [0030] 반면에, 메인광고부재(20)의 제1인쇄부(22)는 광고 내용의 중심부분에 주로 배치될 것이다.
- [0031] 물론, 제1, 제2인쇄부(22)(32)가 형성되는 위치는 권리를 한정하지 않으며, 제1, 제2인쇄부(22)(32)는 서로 완전 분리되거나 약간 겹치도록 구성될 수 있다.
- [0032] 이와 같이, 메인광고부재(20)의 전면에 보조광고부재(30)를 합체하게 되면, 제1, 제2인쇄부(22)(32)의 결합에 의하여 완성된 광고 내용이 표현되는 것이다.
- [0033] 이때, 유통업체에서, 광고내용이 변동되는 경우, 종래에는 광고지 전체를 폐기하여야 하는 반면에 본 발명의 경우, 반복 사용가능한 광고 내용인 제2인쇄부(32)가 인쇄된 보조광고부재(30)는 그냥 내버려 두고, 광고 내용이 바뀐 제1인쇄부(22)가 인쇄된 메인광고부재(20)를 새로 인쇄하여 보조광고부재(30)와 합체하여 재사용하므로 잉크의 사용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.
- [0034] 즉, 하나의 유통업체에서 하루에 인쇄되는 메인광고부재(20)가 수천장이라면, 반복사용 가능한 보조광고부재(30)로 인하여 일년의 잉크 사용량과 전국의 유통업체의 갯수를 곱하여 계산하면, 전국적으로 절약되는 잉크량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.
- [0035] 그리고, 보조광고부재(30)는 투명재질로서, OHP(OverHead Project Film)필름, PVC필름, PET(폴리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)필름, PE(폴리 에틸렌)필름, PP(폴리 프로필렌)필름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

람직하다.

- [0036] 본 발명의 광고 표시장치(10)는 메인광고부재(20)와 보조광고부재(30)가 서로 합체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홀더부재(40)를 더 포함한다.
- [0037]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홀더부재(40)의 구성을 살펴 본다.
- [0038]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홀더부재(40)는 합체된 메인광고부재(20)와 보조광고부재(30)가 가이드홈(44)으로 삽입되고, 전시공간(46)으로 제1, 제2인쇄부(22)(32)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프레임(42) 및 프레임(48)의 저면에 연결되어 바닥에 지지하는 받침부재(48)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.
- [0039] 프레임(42)은 투명 또는 불투명 합성수지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[0040] 받침부재(48)는 프레임(48)의 저면에 결합되고, 하측으로 연장되는 지지봉(47) 및 지지봉(47)에 결합되어 바닥에 접하여 지지하는 바닥판(49)을 포함한다.
- [0041] 지지봉(47)은 원형 또는 다각형 봉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[0042] 바닥판(49) 역시 원형 또는 다각형 판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[0043]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홀더부재(40)의 사용상태를 살펴 보면, 메인광고부재(20)이 전면에 보조광고부재(30)를 합체한 상태에서 프레임(42)의 가이드홈(44)으로 삽입하면, 프레임(42)의 전시공간(46)을 통하여 제1, 제2인쇄부(22)(32)가 합체된 완성된 광고내용을 표현하게 된다.
- [0044] 홀더부재(40)의 저면에 연결된 받침부재(48)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.
- [0045]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홀더부재(50)의 구성을 살펴 본다.
- [0046]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홀더부재(50)는 합체된 메인광고부재(20)와 보조광고부재(30)를 고정면체(15)에 부착하는 접촉테이프인 것이 바람직하다.
- [0047] 즉, 메인광고부재(20)의 전면에 보조광고부재(30)를 접합시킨 상태에서 양 부재를 홀더부재(50)인 접촉테이프를 벽면 또는 가판대의 벽면 등으로 이루어진 고정면체(15)에 접촉시켜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.
- [0048]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홀더부재(60)의 구성을 살펴 본다.
- [0049]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홀더부재(40)는 합체된 메인광고부재(20)와 보조광고부재(30)를 수납공간부(63)에 수납하는 투명보관체(62) 및 투명보관체(62)를 부착하는 접촉부재(64)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.
- [0050] 투명보관체(62)는 투명한 재질의 합성수지 재로서 메인광고부재(20)와 보조광고부재(30)를 수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부재라면 어떠한 부재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.
- [0051]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홀더부재(40)의 사용상태를 살펴 보면, 메인광고부재(20)의 전면에 보조광고부재(30)를 겹친 상태에서 양 부재를 수납공간부(63)을 통하여 투명보관체(62)에 삽입하므로 제1, 제2인쇄부(22)(32)의 조합으로 인해 완성된 광고 내용을 표현한 상태가 된다.
- [0052] 그리고, 메인광고부재(20)와 보조광고부재(30)를 수납한 투명보관체(62)를 벽면 또는 가판대의 벽면 등으로 이루어진 고정면체(15)에 접촉테이프 등인 접촉부재(64)로 부착시켜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.
- [0053] 이하, 첨부도면에 의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.
- [0054]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방법을 보인 흐름도이다.
- [0055] 설명의 편의를 위해 본 발명의 일 실시예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(10)의 구성 및 작용이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번호로 인용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.
- [0056]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, 본 발명의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방법은 제1인쇄부 설정 단계(S10), 메인광고부재 인쇄 단계(S20), 제2인쇄부 설정 단계(S30), 보조 광고부재 인쇄 단계(S40), 메인광고부재와 보조광고부재 합체 단계(S50) 및 메인광고부재와 보조광고부재 고정 및 광고 단계(S60)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.
- [0057] 제1인쇄부 설정 단계(S10)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내용인 제1인쇄부(22)를 설정하는 단계이다. 이 단계에서, 제1인쇄부(22)를 설정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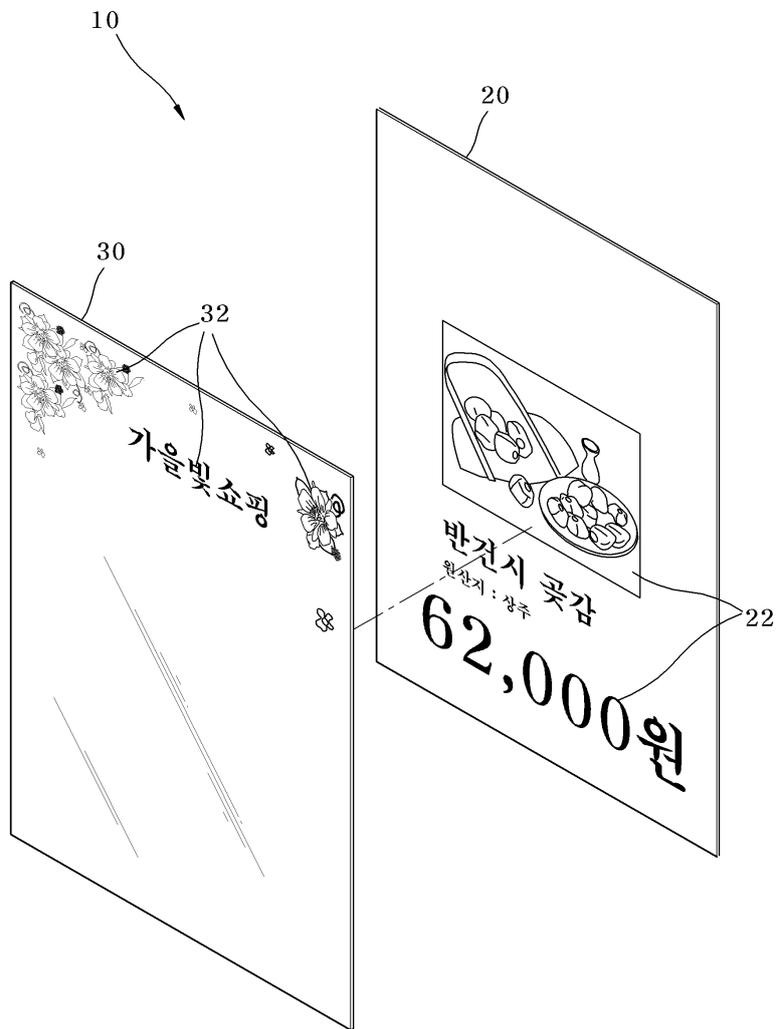
- [0058] 그리고, 메인광고부재 인쇄 단계(S20)는 제1인쇄부(22)를 갖는 메인광고부재(20)를 인쇄하는 단계이다.
- [0059] 그리고, 제2인쇄부 설정 단계(S30)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내용인 제2인쇄부(32)를 상기 제1인쇄부(22)와 서로 겹치지 않거나 겹침을 최소화하도록 설정하는 단계이다.
- [0060] 그리고, 보조 광고부재 인쇄 단계(S40)는 제2인쇄부(32)를 갖는 투명재질의 보조광고부재(30)를 인쇄하는 단계이다.
- [0061] 연이어서, 메인광고부재와 보조광고부재 합체 단계(S50)는 메인광고부재(20)의 전면에 보조광고부재(30)를 합체하여 완성된 광고 내용을 표현하는 단계이다.
- [0062] 그리고, 메인광고부재와 보조광고부재 고정 및 광고 단계(S60)는 합체된 메인광고부재(20)와 보조광고부재(30)를 고정하여 광고하는 단계이다.
- [0063] 그리고, 합체된 메인광고부재(20)와 보조광고부재(30)의 고정은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홀더부재(40)(50)(60) 중에 어느 하나의 방식을 이용하여 고정하도록 한다.
- [0064]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하여 설명되었으나,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, 당해 기술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.
- [0065] 따라서,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아래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.

도면의 간단한 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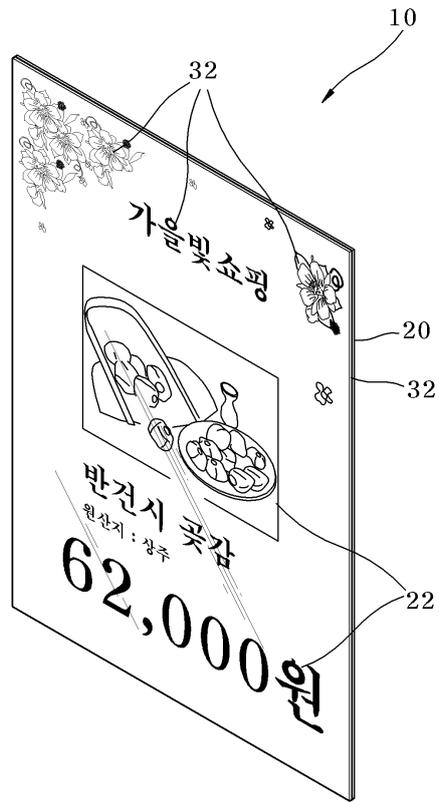
- [0066]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의 분리 사시도.
- [0067]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의 사용 상태 사시도.
- [0068] 도 3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를 제1실시예의 홀더부재에 설치 전 분리 사시도.
- [0069] 도 4는 도 3에 도시된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의 사용 상태 사시도.
- [0070]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를 제2실시예의 홀더부재로 사용하는 상태도.
- [0071]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장치를 제3실시예의 홀더부재로 사용하는 상태도.
- [0072]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투명체를 이용한 광고 표시방법을 보인 흐름도.
- [0073] *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*
- [0074] 10 : 광고 표시장치 15 : 고정면체
- [0075] 20 : 메인광고부재 22 : 제1인쇄부
- [0076] 30 : 보조광고부재 32 : 제2인쇄부
- [0077] 40 : 홀더부재 42 : 프레임
- [0078] 44 : 가이드홈 46 : 전시공간
- [0079] 48 : 받침부재 47 : 지지봉
- [0080] 49 : 바닥판 50 : 홀더부재
- [0081] 60 : 홀더부재 62 : 투명보관체
- [0082] 63 : 수납공간부 64 : 접촉부재 :

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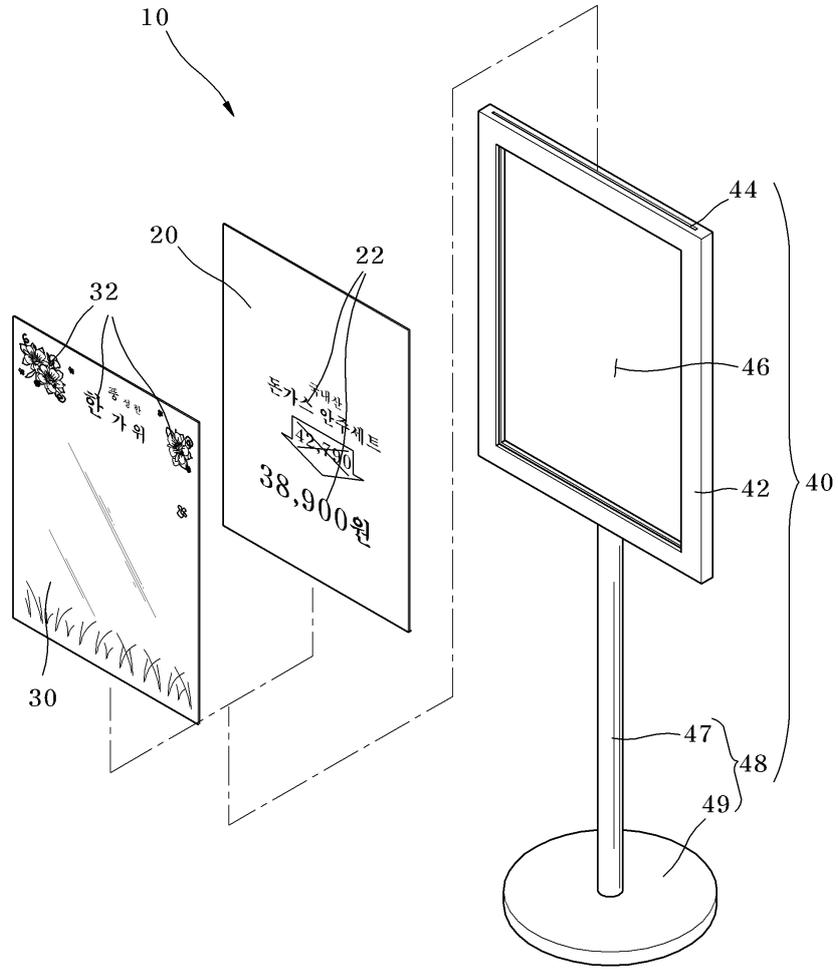
도면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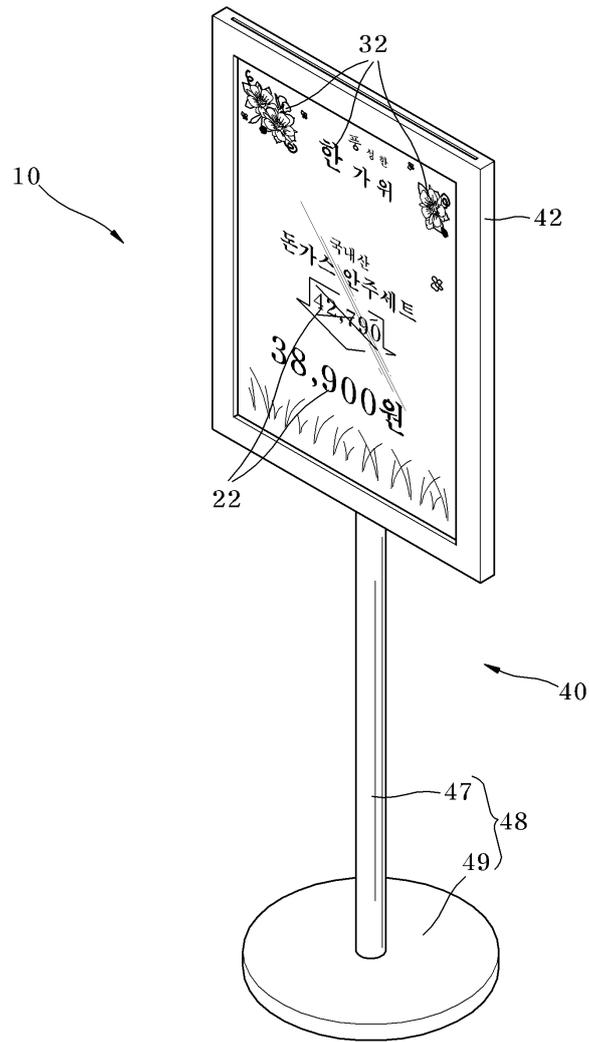
도면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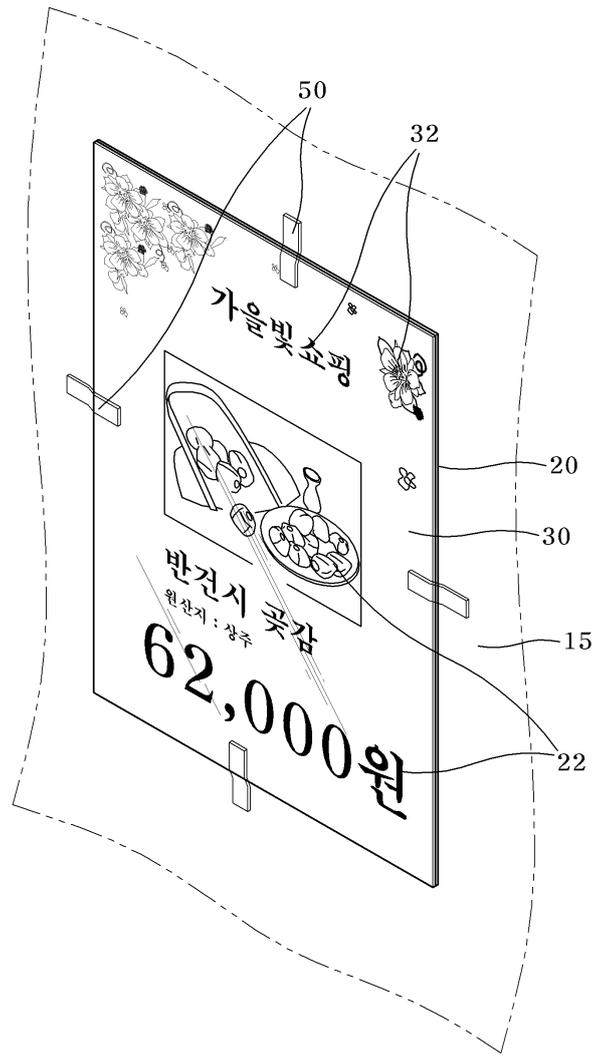
도면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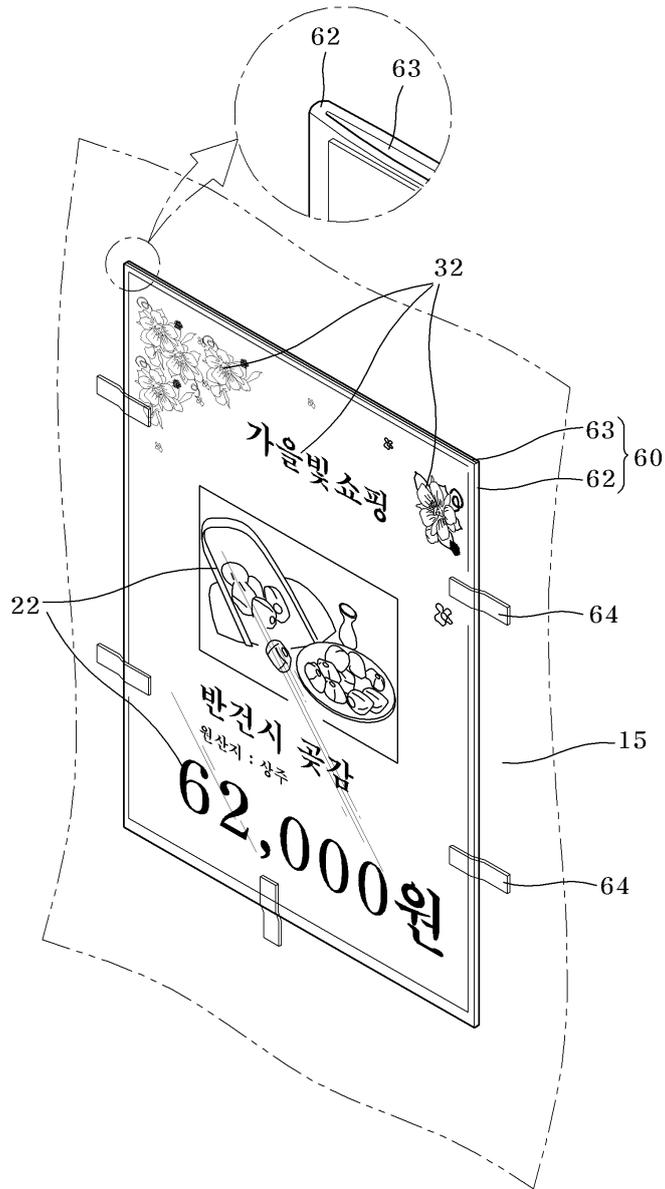
도면4



도면5



도면6



도면7

